

토론회 자료집(2)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 일시 : 2001년 2월 8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719-8946)
국회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784-2376)

자료집 순서

2쪽

[기자회견문] SOFA 재협상 촉구와 국회비준 거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4쪽

[요약자료]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7쪽

[해설자료]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참고>이 자료집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과

< 국회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이

공동주최한 “SOFA개정안, 국회는 왜 비준을 거부해야 하나

?”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입장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SOFA 재협상 촉구와 국회비준 거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기자회견문

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는 2월 16일 오후 2시, 한미정부당국이 지난 1월 18일 정식 서명한 한미 SOFA 개정안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 SOFA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당국이 서명한 SOFA 개정안이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해 온 전면개정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일 뿐 아니라 심지어 개악된 부분까지 있어 문제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3.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개정범위가 한미당국의 요란한 선전과는 달리 '본협정' 31개조 중에서 고작 1개조인 제22조 5항만이 개정되었을 뿐이어서 매우 협소하여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하는데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환경조항의 경우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합니다.

○일부 개정된 부분조차도 여러 단서조항으로 개정의 실제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악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식 서명된 SOFA 개정안을 보면 지난 12월 28일 외교통상부가 합의안으로 발표한 내용(개정협상 결과 주요요지)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첨한 <소파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자료 및 해설자료 참조)

4. 이번 개정안은 위와 같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핵심조항들은 그대로 둔 채 몇몇 지엽적인 개정과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 문구를 집어넣는 기만적인 개정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고 받기식 개정으로 미국은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듯이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서 현행보다 더 개악된 내용의 개정을 받아들였으므로 한미SOFA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한미SOFA의 모범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5. 결국 이번 한미 정부당국의 SOFA 개정안은 SOFA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한국의 주권을 부분적으로나마 되찾고자 했던 온 국민의 염원을 짓밟았으며 광범위한 국민들 속에서 일고있는 반미여론을 무마하고 기만하기 위한 데 그 주된 관심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6. 따라서 기만적인 SOFA 개정안은 국회비준이 거부되어야 하며 한미 당국은 즉각 재협상 및 전면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7. 특히 내일 열릴 예정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SOFA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개별 국회의원들의 비준 거부 의사 표명이 어려울 경우 자유로운 토론과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국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의 일방적인 투표로 통과된다면 불평등한 SOFA의 문제점을 정당화하여 향후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우리 민족사의 큰 수치이며 불행입니다.

9. 우리는 양식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SOFA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따져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SOFA 개정안 비준이 거부됨으로써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001년 2월 15일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 상임대표: 문정현 · 공동대표: 권영길 단병호 박순희 이남순 이장희 이현숙 진관 채수일 홍근수

[요약자료]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한미당국은 이번 SOFA개정협상을 통해 소파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을 개정하였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새로 추가하였다. 이후 한미당국은 이를 두고 마치 불평등한 SOFA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개정범위가 '본협정' 31개조 중에서 고작 1개조인 22조 5항만이 개정되었을 뿐이어서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다.

- '본협정'은 3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는 또 여러 '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협정'의 각 조와 각 항은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평등하기 이를 데 없는 '조'와 '항'들이다. 그런데 한미당국의 요란한 선전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 '본협정'은 단지 '22조 5항'만이 개정되었을 뿐이다.

(2) 신설된 환경조항의 경우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 '본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에 신설된 환경조항(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의 경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식의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적 규정성, 실효성이 없으며 환경오염 시 원상복구나 피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역시 "주기적으로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라는 식의 선언적 문구 이상이 아니다.

(3) 일부 개정된 부분도 여러 단서조항이 달려 있어 개정의 실제 의미를 상실하였다.

- 12개 중요범죄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개정하면서 ①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것 ② 구금의 상당한 이유(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법적 결정)와 필요(증거 인멸이나 또는 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 가능성 있는 경우 등)가 있을 것 등의 단서조항을 두어 12개 중요범죄라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한국의 사법당국이 신병인도를 받을 수 없다.

- 계속구금권의 경우에도 ① 현행범일 것 ②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③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피해가능성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있는 때 ④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을 것 등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국 측은 계속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검역의 경우에도 단, 식료품이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검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4) 개악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 '미군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며 '기소 후 한국당국의 불신문', '변호사 출두시까지 불신문 및 변호사 부재시 취득한 증언·증거는 재판과정에서 불사용', '형집행에 관한 미측의 특별 요청에 대한 충분한 고려'등 한국의 형사소송법 위반, 사법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개악하였다.

-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공무수행 중이거나 \$25,000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내에서는 200만원 이상의 대물교통사고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미군에게 지나친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 공여지가 침해된 경우 한국측이 침해 제거 조치를 취하고 미측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키로 하였다.

공여지를 무상으로 미군에게 제공하고서도 그 공여지가 침해될 경우 한국측이 복구해주고 미군측에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미군에게 간과 쓸개까지 다 내주는 굴욕적인 개악이다.

- 주한미군 가족들의 취업을 허용하는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주한미군 가족들의 불법취업과 불법영업행위를 합법화시켜 준 것이다.

(5) 한미당국이 실제 공식서명과정에서 2000년 12월 28일 합의, 발표한 내용(개정협상 결과 주요요지)보다 더욱 후퇴한 부분도 적지 않다.

- 외교통상부는 당초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미측은 정기적으로 환경관리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오염을 제거”하기로 하고 이를 ‘특별 양해각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공식 서명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경 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로 바뀌어 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주요오염 제거’가 실제로는 ‘제거’가 아닌 ‘치유’란 표현으로 합의되어 있어 환경오염에 대해서 미국이 져야할 책임 정도가 훨씬 낮게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외교통상부는 당초 노무 분야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시부터 45일 간의 냉각기간”을 두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냉각기간에 관한 규정은 한미 SOFA 본 협정 제17조 4항(가)(5)에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공식서명안을 보면 한미 SOFA 본 협정 제17조 4항(가)(5)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사항’에 냉각기간을 45일로 단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협정과 양해사항의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 협정이 우선시 될 것이기 때문에 노무 관련 냉각기간은 외교통상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외교통상부는 한미 SOFA 적용 대상의 가족의 범위에서 “‘자녀’와 ‘부모’의 개념을 규정”한다. “‘기타친척’에 있어서는 한미 정부 혹은 법원이 이러한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미군당국이 한국정부에 ‘기타친척’으로 통보한 경우”로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부분 역시 실제 공식서명안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대신 이 부분은 공식서명문서가 아닌 비공개 사항인 ‘합동위 합의사항’(공식 국문안조차 없다)으로 처리하였다. ‘합동위 합의사항’은 그것의 비공개가 말해주듯 공식적 규정력이 없는 사항이다. 이것은 외교통상부 스스로도 ‘주요요지’라며 중요하게 다룬 사항을 아무런 실질적 규정력을 갖지 못하는 ‘합동위 합의사항’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2001년 2월 15일

[해설자료]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1. 들어가며

난항을 겪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에 관한 개정 협상이 2000년 12월 28일 전격적으로 타결되고 이어 2001년 1월 18일 양 정부간에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SOFA는 1967년에 제정된 이래 1991년에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개정 협상은 95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실로 6년만에 타결을 본 셈이다. 이것은 이번 협상이 그만큼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나아진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개정에 머무르고 있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개악되기조차 하여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 개정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게다가 SOFA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한미 당국은 클린턴 임기 내에 SOF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협상을 벌이는 열의(?)를 보였으나, 그것은 연말연시를 틈타 전격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전면개정을 염원하는 한국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술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다음은 이번의 기만적인 SOFA 협상 결과를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이 요구했던 전면 개정안과 비교해 분석·평가한 것이다.

2.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의 SOFA 개정의 대전제 및 주요 개정요구안

(1) 개정의 3대 전제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체결) 제4조에 의한 한국에 주둔할 주한미군에 관한 지위협정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8천여 만평에 달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 해주고도 임대료는 고사하고 공여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없이는 그 부속협정에 불과한 SOFA의 어떠한 개정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SOFA는 본협정 및 부속문서(합의의사록, 양해사항)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모든 조항들이 불평등하기 이를 데 없다. SOFA의 본협정 및 부속문서의 전 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91년 1차 개정의 대가로 체결된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이 폐기되어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으로 우리나라가 미군에게 매년 지불하는 액수는 3억 달러에 달한다. 미군이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만큼 주둔비용은 당연히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SOFA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군에게 임대료를 받아야 할 판에 오히려 특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주둔 비용을 사실상 한국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이 요구했던 SOFA 개정의 대전제는 다음과 같다:

- 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최소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불필요, 무상 주병권, 주둔기간의 무제한 등의 규정 개정
- ② SOFA 본협정 및 부속문서(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SOFA 31조 전 조항에 걸쳐 전면 개정
- ③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의 폐지

(2) 주요 개정 요구안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4대 원칙에 의거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 ① 수사 및 재판, 형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관할권이 한국 사법당국에 전면적으로 주어짐으로써 사법주권의 완전한 회복
- ② 민사소송 및 판결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의 마련
- ③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관한 규정을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개정
- ④ 환경조항 신설 및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회복과 미국 정부 피해배상을 명시
- ⑤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노동3권의 전면 보장
- ⑥ 통관, 관세, 과세상의 지나친 특혜 폐지
- ⑦ 보건 및 위생에 대한 검역의 강화

3.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이 요구했던 SOFA 전면 개정 요구안과 실제 개정안의 분야별 비교 평가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① 개정 요구안

▶ 형사관할권

- 형사관할권 제약 요소 삭제 (제22조 3항 다)
: 합의의사록에서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조항 삭제
- 형사관할권 적용 대상 범위의 축소 (제22조 1항 가 / 제22조 3항 가)
: 현행 협정에서 적용 대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합중국 군법에 따르는 자'로 한정(나토협정과 미일협정에 준함)
- 형사관할권 인적 범위에서 초청계약자 배제 (제15조 8항)

▶ 신병인도시기

-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최소한 피의자 공소시점으로 조정 (제22조 5항 다)
- : 피의자가 미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절차가 끝난 뒤에야 신병인도 후 구속할 수 있던 것을 공소시점으로 앞당기고, 중범인 경우 공소 전에도 가능케 개정

▶ 미군 피의자에 대한 특혜

-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 (제22조 9항 / 합의의사록)
- : 미국 대표의 입회 없이 미군피의자의 예비수사, 수사 또는 재판진행 불가능 조항 삭제
- : 미국 대표 참여 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진술의 유죄증거채택 불가능 조항 삭제
- : 합중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삭제
- : 검찰의 상소권 제약 조항 삭제

▶ 공무

- 공무의 최종 판단을 한국 법원에 일임 (양해사항 제22조 3항 가-3-가) (나토 협정과 미일 협정에 준함)

② 실제 개정된 내용

▶ 신병인도시기

- 개정협정 제22조 제5항에서
-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 개정합의의사록에서 기소시 대한민국이 구금인도 요청할 수 있는 범죄유형 규정
- 신병인도 요청할 수 있는 범죄 유형 : (1) 살인 (2) 강간 (3)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괴 (4) 불법 마약거래 (5) 유통목적의 불법 마약생산 (6) 방화 (7) 흉기 강도 (8) 위의 범죄의 미수 (9)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10)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11)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12)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 체포시 계속구금권(개정합의의사록)

-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을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우리측이 체포하였을 경우 계속구금 가능. 단, 증거인멸, 도주,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가해 가능성 때문에 피의자를 구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계속 구금권 행사. 단, 합중국 당국은 그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적법한 사유가 있다면 구금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 미군 피의자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개정합의의사록)

- 질병, 부상, 임신 등의 경우 재판전 신병인도 연기에 대한 호의적 고려
- 기소 후 한국 당국의 불신문
- 우리측이 체포후 계속구금권을 행사할 경우 변호사 출두시까지 불신문 및 변호사 부재시 취득한 증언·증거는 재판과정에서 불사용.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미측은 미정부대표의 신속한 출석보장
- 현장 검증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
- 형집행에 관한 미측의 특별요청에 대한 충분한 고려

▶ 교통사고 처리(합동위 합의사항)

- 미군과 미군속의 대물교통사고 중 공무수행중이거나 \$25,000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입건하지 않음

③ 개정안 평가

▶ 나아진 점

12개 중요범죄 유형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긴 것과 흉악범죄자에 대해서 체포시부터 계속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나아진 것이다.

▶ 문제점 및 계약된 점

- 우선 형사재판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재판권 행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SOFA 합의의사록(제 22조 3항)에는 “한국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수많은 미군 범죄에 대해서 한국의 사법 당국은 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99년 562건 중 20건 3.56%-법무부 통계)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이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 다음으로 공무 여부 판단의 주체 문제도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 한미SOFA 본협정(22조 3항-가-2)에 의하면 “공무 중 일어난 범죄는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즉 공무 중 일어난 범죄는 한국의 사법 당국이 전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 여부의 판단은 합의의사록(22조 3항 1)에 미군이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미군 범죄에 대해 한국의 사법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 형사재판권 적용 대상 역시 개정되지 않았다.

: SOFA는 형사재판권의 적용대상을 미군, 군속,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의 범위에는 '기타 친척'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SOFA 대상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단서조항을 두어 '초청계약자'까지 미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속은 물론이고 그 가족, 친척, 초청계약자들도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 부분 역시 '합중국 군대의 군법에 따르는 자'로 한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겨우 그것도 공식문건도 아닌 '합동위 합의사항'으로 “기타친척”을 법적으로 확인한 자”정도로 개정했을 뿐이다.

-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밑에 한국의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며 계약되조차 하였다.

: '기소 후 한국 당국의 불신문'과 '한국측이 계속 구금권을 행사할 경우 변호사 출두시까지 불신문 및 변호사 부재시 취득한 증언·증거는 재판과정에서 불사용', '형집행에 관한 미측의 특별 요청에 대해 충분한 고려' 등이 그것이다.

중요범죄라 하더라도 기소 전에는 피의자의 신병이 미군측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법 당

국이 제대로 신문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소 후 불신문'은 미군피의자에 대해 아예 “신문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다. 중요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긴 것이 이 규정 때문에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결국 '기소 후 불신문'은 중요범죄 미군피의자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한국측이 계속구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신문, 증언, 증거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사면을 보장해 주고 있다.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설된 규정들은 미군피의자가 어떻게든 사법적 처리를 면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준 계약안에 지나지 않는다.

- 또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공무수행 중이거나 \$25,000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한 것도 계약된 것이다.

: 국내의 경우 피해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입건된다.

※ 형사재판권과 관련한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재판권 포기조항, 공무판단문제 등)는 전혀 개정하지 않은 채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긴—그것도 모든 피의자가 아니라 중요 피의자의 경우에만 앞당긴—데 불과하며, 더구나 미군피의자가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준 계약안으로 '사법주권 회복'이라는 국민적 민족적 요구를 외면한 기만적인 개정안이다.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① 개정 요구안

▶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사용은 합동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등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체결. 이를 위해 국내법상 '기지공용수용특별법'을 제정하고 '계약기간', '임대료', '계약의 재협상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

SOFA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무기한으로 되어있는데 그 유효기한을 정하여(가령 5년 또는 10년) 일정기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 및 안전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 반환시 복잡한 절차규정을 삭제하고 즉각 반환토록 한다.

▶ 안전과 관리

미군시설과 구역 안에서 위험한 무기의 반입이나 군사작전, 그 외 한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한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군사목적에 반하는 건축행위시에는 한국측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명시

② 실제 개정된 내용

▶ 불용토지 반환 및 용도 변경

-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당초 공여문서에 명시된 용도 또는 계획된 사용목적상 더 이상 필요 없는 공여지 반환을 목적으로 연1회 이상 모든 공여지를 합동실사

- 공여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 미측은 우리측에 통보 및 협의. 미측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용 계획이 있다고 제기하는 경우, 합동실사.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3년내 사용되지 않으면 합동위에서 기간 연장 여부 결정

-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반환

▶ 공여지 침해 방지

- 공여지가 침해된 경우 합동실사 및 침해제거를 위해 협의. 우리측은 침해 제거 조치를 취하고 미측에 행정적 지원 제공. 미측은 공여지의 적절한 관리 및 침해방지를 위해 필요 조치

▶ 시설건축시 한국측과 사전 협의

- 미측은 공공용역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사회의 건강·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개조·해체·신축·개축 등의 계획을 우리측에 사전 통보 및 협의

③ 개정안 평가

▶ 나아진 점

시설·구역과 관련하여서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고작 시설건축시 한국측과 사전 협의한다는 것이다.

▶ 문제점 및 개악된 점

- 개정안에는 불용토지 반환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반환'한다는 것인데 미군이 사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 그리고 '공여지 침해 방지'조항에서 공여지가 침해된 경우 한국측이 침해 제거 조치를 취하고 미측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개악된 내용이다. 공여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서도 그 공여지가 침해될 경우 한국측이 원상복구 해주고 미군측에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미군에게 간과 쓸개까지 다 내주는 굴욕적인 내용이다.

- 시설·구역 문제는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무릇 주권국가라면 한 치의 땅이라도 소홀히 다루는 법이 없는 법이다. 그런데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는 미군이 우리 땅을 무상으로 그것도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이와 관련한 어떤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군에게 무상, 무기한으로 우리 영토를 내주는 것은 SOFA의 어떤 조항보다도 한국의 주권을 가장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전면적인 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환경에 관한 조항

① 개정 요구안

▶ 환경 관련 규정 신설 및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의무 명시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 협의 및 사전통보 의무, 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한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보장 의무, 환경오염피해조사요청 허가 의무, 환경오염관련자료의 제출 의무, 환경오염규제 및 방지 의무,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보장, 손해배상청구예의 협조 의무 등과 같은 미군당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② 실제 개정된 내용

▶ 합의의사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 합중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하며, 우리측은 미군의 안전을 적절히 고려한다.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채택

- 환경관리기준 : 양국 환경법령 중 보다 보호적인 기준 참조. 환경관리기준 매 2년마다 검토

- 정보공유 및 출입 : 환경문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공동작업 및 시설·구역에 대한 적절한 출입절차 마련

- 환경이행실적 : 미측은 정기적으로 환경이행실적 평가, 우리측은 기지 외부의 오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

- 환경협의 : 합동위원회의 환경관련 분과위원회는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 회합

③ 개정안 평가

▶ 나아진 점

처음으로 환경문제가 논의되고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점 이외에는 나아진 것이 없다.

▶ 문제점 및 계약된 점

- 환경분야는 미군의 독극물, 폐유 무단 방류 등으로 이번 개정 협상에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았던 분야이다. 그러나 막상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무런 법적 규정력이 없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상호 인정한다"라는 선언적 문구를, 그것도 본문도 아닌 합의의사록에 추가하였을 뿐이어서 규정성을 갖는 환경조항 신설과 원상복구, 피해배상의 명시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철저히 우롱하였다.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역시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환경관리기준을 정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정기적으로 환경문제를 논의한다"는 선언적인 내용 이상이 아니다.

- 반면에 한국측이 "미군기지 외부의 오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계약된 것이다. 실제로 미군기지의 무단 폐유 방류, 기름 유출 등으로 기지외부는 심각히 오염되어 있다. 기지외부의 오염원이 바로 미군기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한국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당연히 미군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환경과 관련한 이번 개정안은 미군이 아무런 책임이나, 피해배상, 원상회복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심지어는 계약되기까지 한 개정안이다.

(4) 노무에 관한 조항

① 요구했던 개정안

- 미군 직접고용제를 간접고용제로 전환(본협정 제17조 제1항, 제2항)하여 한국노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야 한다(미일협정, 나토협정에 준함)

- 고용 안정 및 노동3권 보장

: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현행 70일의 냉각기간을 최소한 15일 이내로 축소

: 합동위원회 등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

② 실제 개정된 내용

- “군사상 필요로 해고할 수 있다”를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 합중국 정부는 해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합의의사록을 개정하고 ‘군사상 필요’를 양해각서에서 “전쟁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군대임무 변경, 자원제약 등 주한미군 방위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

- 노사쟁의 해결 절차를 노동위원회의 조정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합동위원회 회부

-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시부터 45일간 냉각기간(양해사항)

-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한국인 근로자 독점적 고용 보장 및 한국인 채용 보직의 미국인 보직으로의 변경 금지

: 주한미군 가족의 국내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취업 허용 범위 내에서 취업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취업 허가

③ 개정안 평가

▶ 나아진 점

‘군사상 필요시’라는 ‘임의해고’ 조항을 ‘해고제한’ 규정으로 변경한 것과 ‘군사상 필요’를 한정하고 ‘미군당국의 해고 최소화 의무’를 규정한 것은 나아진 점이다.

또 ‘노동부 알선 후 합동위원회에 회부’하던 쟁의절차를 ‘노동위원회 조정 후 합동위 회부’로 개정한 것과 ‘한국인 고용원 우선고용’을 보장하기로 한 것 또한 개정전의 SOFA와 비교해 볼 때 나아진 점이다.

▶ 문제점 및 개악된 점

- 먼저 냉각기간을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한 것은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나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냉각기간 70일은 SOFA 본협정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은 모순되게도 법적구속력을 갖는 본협정의 냉각기간 규정은 그대로 둔 채 법적구속력이 없는 양해사항에서 냉각기간을 45일 단축한 것으로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 기만적인 것이다.

- 또한 한국인의 우선고용을 보장대신 미군가족의 국내취업을 보장해준 것은 그 동안의 불법취업을 합법화해준 개악된 것이다.

- 노무관련 조항 중 무엇보다도 가장 개정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SOFA 본협정 제17조(노무) 4항이다. 이 조항에는 “쟁의 중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합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미군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노동자대표가 배제된 합동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시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의 개정안에서 개정된 노동쟁의절차와 냉각기간의 조정 등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리고 여타의 노동자 권리들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며, 노동자 대표가 합동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조항들이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결국 개정 SOFA에서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간접고용제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이 한국노동법을 전면적으로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

(5) 통관 및 관세, 과세

① 개정 요구안

- 관세특권의 제한 및 세관검사 강화
- 비세출자금기관의 지나친 수익사업에 대한 조세 부과

② 실제 개정된 내용

▶ 비세출자금기관

- 양 측은 ‘회의록’을 채택, 한미SOFA 합동위가 특별검토를 하여 비세출자금기관 관련 문제를 2001. 12. 31까지 해결토록 합의하고 1981년 합동위 합의사항 개정에 반영

- 향후 한미SOFA 합동위 검토 주요 과제
- 주한미군클럽 한국인 회원수 조정문제
- 주한미군 부대내 한국인 근로자 및 주한미군이 초청·동반한 한국인에 대한 출입 허용 문제
- 무자격자 출입통제 조치 관찰을 위한 한국정부 관계기관의 미군 영내 방문 문제
- 한국인의 미군 골프장 출입 제한 문제 등

③ 개정안의 문제점

- 통관·관세 및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떤 명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개정해야 할 주요 과제와 기간(2001년 12월 31일까지)을 정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한·미 협상단이 이번 한미 SOFA 협상을 클린턴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고 하면서 내용보다는 타결자체에 얼마나 급급해 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이다.

- 개정하기로 한 주요 과제를 보면 '미군부대 출입제한 문제'만 다루기로 하였을 뿐 정작 중요한 '비세출자금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통제와 과세 문제'는 주요과제에서 빠졌다. 결국 미군이 한국인의 출입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막대한 수입사업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전적으로 미군의 처분에 맡겨지고 있다. 수익사업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익사업과 수익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제와 과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밀수품의 유입통로가 되고 있는 미군과 군속의 출입시, 미군수품의 통관문제와 관세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보면 통관·관세 및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개정된 것이 없으며 계획도 없다.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① 요구했던 개정안

- 보건 및 위생검역의 강화
- : 인간이나 동식물의 예방과 통제에는 '한국법규와 절차'가 시설 및 구역 내 미군구성원과

군속 및 가족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한국당국은 국내에 반입되는 주한미군용 식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한다.

② 실제 개정된 내용

- 동·식물의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하여, 그리고 마군 및 군속, 가족의 식료품이 중단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 정부당국은 합동위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합동검역을 실시한다.

③ 개정안 평가

▶ 나아진 점

이제까지 아무런 검역 규정이 없었는데 합동검역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나아진 점이다.

▶ 문제점

-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합동위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공동검역을 실시'하는데, 식료품이 중단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이 검역이지 검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 식료품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지키자면 검역이 형식적으로 극히 제한된 샘플 검역밖에 할 수 없을 것이 뻔하다. 검역의 목적이 밀수나, 병해충의 유입을 막는데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세부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사람과 군 장비에 대해서도 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7) 민사에 관한 조항

① 개정 요구안

-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본협정 제22조 5항 마)

- :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 삭제
- : 한·미 공동의 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배상금을 무조건 균등분담토록 할 것이 아니라 책임비율별로 분담토록 함
- 민사소송 및 판결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 :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적용키 위한 세부규정 신설
- : 집행 절차 자세히 규정. 특히, 미군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명시
- 미군 차량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및 치료비 선지급 조항 신설

② 실제 개정된 내용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 합의사항’

- (소송서류 송달) 한국 법원은 미군 연락기관 또는 다른 방법(공시송달, 직접송달)을 통해 소송서류 등을 송달할 수 있으며, 미측은 이에 협조
- (법정출석 및 증거수집) 미측은 법정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며, 미국법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제출 및 미군기지 출입 등에 협조
- (강제 집행) 한국법원이 미군기지 내에서 직접 강제집행을 실시. 미측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며, 우리측은 미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봉급압류 가능

③ 개정안 평가

▶ 나아진 점

그간 소송서류 조차 송달할 수 없던 것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기지 출입의 협조, 강제집행 및 봉급압류를 가능토록 한 것은 나아진 점이다.

▶ 문제점 및 계약된 점

우선 ‘공무집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집행과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절차와 배상 문제’만 일부 개정되었을 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사사건이 공무집행 중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민사분야의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4. 개정안에 대한 총평

(1) 이번 개정안은 앞에서 각 분야 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핵심조항들은 그대로 둔 채 몇몇 지엽적인 개정과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 문구를 집어넣는 기만적인 개정으로 그치고 말았다.

(2) 그리고 주고 받기식 개정으로 미국은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듯이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서 현행보다 더 개악된 내용의 개정을 받아들여써 한미SOFA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만성은 31개조와 각 조마다 수 개항에 달하는 본협정 가운데서 22조 5항의 단 한문장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여실히 입증해준다.

(3)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한미SOFA의 모범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4) 결국 이번 한미 정부당국의 한미소파 개정안은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온 국민의 염원을 짓밟았으며 광범한 국민들 속에서 일고있는 반미여론을 무마하고 기만하기 위한 데 그 주된 관심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5) 따라서 기만적인 SOFA 개정안은 국회비준이 거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당국은 즉각 재협상 및 전면개정에 나서야 한다.

※ 본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요약자료, 해설자료』는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http://sofa.jinbo.net>) 공지사항방(보도자료모음, SOFA자료실)과 국민의 소리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소파개정국민행동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e-mail로 받으실 분은 revisesofa@korea.com으로 e-mail(이름, 소속단체, 연락처 포함)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